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53

발의연월일: 2021. 8. 6.

발 의 자:태영호・金炳旭・송석준

최형두 · 정희용 · 이명수

김영식 • 권영세 • 조경태

한무경 · 송언석 · 정찬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말미암아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·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하지만 현행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·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최근 급등한 상속·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

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(안 제71조). 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전단 중 "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"을 "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상속세·증여세 납부세액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: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
 가.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(이하 이 조에서 "상속
 · 증여재산"이라 한다)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 · 증여재
 산 전체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
 - 나. 해당 납세의무자의 상속세·증여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·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·증여재산 중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할 것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제3항 중 "대상금액의 산정방법"을 "대상금액 및 부동산분 상속 세·증여세 납부세액의 산정방법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1조(연부연납) ① 납세지 관할 제71조(연부연납) ① -----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-----상속세 납부세액이 나 증여<u>세 납부세액</u>이 2천만원 나 증여세 납부세액(이하 이 조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에서 "상속세·증여세 납부세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 액"이라 하다)-----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 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 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, 「국세징수법」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 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 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 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각 회분의 분할납 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 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호 외의 경우: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

<신 설>

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 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: 연부연납 허가일 부터 15년
 - 가.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(이하 이 조 에서 "상속ㆍ증여재산"이 라 한다) 중 부동산의 가 액이 해당 상속 · 증여재산 전체 가액의 2분의 1을 초 과할 것
 - 나. 해당 납세의무자의 상속 세 · 증여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 세 ·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 속 · 증여재산 중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할 것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
- ③ -----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 --대상금액 및 부동산분 상속 세ㆍ증여세 납부세액의 산정방

	<u>법</u> 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